

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이봉준 의원)

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.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정원도시국 소관 사안으로

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

의안번호 제2541호 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
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
보고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
법률」 제13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

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

‘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’을
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우리 국 검토의견은 ‘원안동의’입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